

日本 石油産業의

환리스크对策現況 (下)

4. 原油輸入에 관계되는 企業 會計處理의 現況

原油輸入을 포함한 外貨去來에 있어서는, 79년 6월 26일, 企業會計審議會에서 設定된 「外貨去來等 會計處理基準」에 따른 회계처리가 행해지고 있다. 그 기업회계처리의 현황은 대개 다음과 같다.

① 原油輸入去來가 행해진 날(註를 参照)의 換率로 円換算을 한 仕入高를 計上한다. 輸入유전스 결제일까지 환율이 변동하여 그 결과, 결제액이 仕入高로서 記帳된 額과 달라져도 그것은 買掛債務 혹은 수입유전스 借入에 따라 생긴 金融損益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仕入高를 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처리상 원유구입시점의 換率에 따라 原油코스트가 확정되게 되어 있다.

〈註〉 石油산업의 경우, 많은 기업이 전통적으로 船積시점, 즉 계약상 所有權移轉시점을 原油수입거래일(買入計上日)로 하여 買入額을 計上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日本에서 탱크·인한 후의 檢尺(後尺) 시점에서 비로스 買入을 計上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다른 산업에서는 日本에 도착한 시점을 갖고 買入을 計上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원유수입에 따른 外貨短期金銭債務(시퍼즈유전스 및 輸入유전스)에 있어서는 이것이 발생한 시점(原油수입거래가 행해진 날)의 換率과 수입유전스결제일의 환율과의 차이에 대해서 決濟損益 소위 유전스差損益이 발생한다. 또 외화단기금전채무의 발생시점과 결제일과의 사이에 決算日이 있는 경우에는 決算時의 환율에 의해 換算替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債務발생시점의 환율과 決算시의 환율과의 차이가 換算損益으로서 計上되게 된다.

석유산업전체에서 79년 약 4천 1백억 円의 差損발생, 80년 약 5천 8백억 円의 差益발생이라는 경우의 환차손익은 원유수입에 따라 외화단기금전채무(시퍼즈유전스

및 수입유전스)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實現損益) 決濟損益과 (評價損益) 換算損益과의 합계이다. 환차손익의 財務諸表에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차익과 차손을 相殺한 환차손익의 純額을 營業外損益의 한 항목으로 損益計算書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註 1〉 決算시의 환율로서는 決算일의 直物換率외에, 決算일 전후 일정기간의 直物換率의 평균율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決算日前에 환예약이 되어있는 것에 의해, 결제시점의 円貨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円貨額을 計上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註 2〉 단기의 外債 轉讓에 대해서 회계처리상은 期末換算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세법상은 취득시 환산법과 기말시환산법의 임의선택이 인정되고 있다. 즉 기말환산을 하지 않는 것도 인정된다. 다만 稅務當局에의 届出의무가 부과되어 왔고, 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한 경우, 상당정도의 계속성이 요구된다.

5. 石油産業에서의 換리스크对策의 方向과 문제점

(1) 換리스크对策의 기본방향

앞으로도 變動換率制下에서는 환율의 등락이 예상된다. 환율의 변동에 따른 原油코스트 자체의 변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經營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有効한 수단으로서, 가능한 한 원유구입시점에서 최종적인 原油코스트를 확정하는 것, 즉 원유구입시와 유전스返濟時와의 사이의 換리스크를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換리스크对策을 강구할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는 각기업의 經營判斷의 문제이며, 최근과 같이 累積債務을 안고 있는 어려운 經營환경하에서 석유각기업이 円貨가치가 높은 기조에 있다는 판단하에 換差益을 기대한다거나 그때 그때의 換率에 의해 換리스크 对策의

실시를 加減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石油산업의 경영자는 적극적으로 換리스크 対策을 강구함으로써, 換差益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또 환차손의 발생에도 어렵지 않은 경영을 지향해나갈 수 있을것으로 여겨진다.

(2) 換리스크 対策의 추진방향

① 換리스크대책으로서의 輸入金融의 円金融化도 換子約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점, 또 기업의 財務體質에 따라서는 輸入금융의 円金融化에 한계가 있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換리스크 대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수입금융의 円금융화에 의한 것일지, 換子約에 의한 것일지, 혹은 그들을 합한 것에 의한 것 일지는 각기업의 自主的判斷에 맡겨야 할 것 같다.

② 석유산업의 경영은 換리스크회피에 노력해야 하며, 각기업의 경영자는 換리스크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

각기업이 경영의 안정화를 목표로 換리스크대책을 추진해 갈 경우, 原油購入額의 어느 정도에 대해 換리스크회피책을 강구할지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이것을 향해 착실히 노력함으로써, 이 목표수준을 중장기적으로 引上해간다는 대응이 바람직하다.

各企業이 日標수준을 설정할 때에는 예를 들면, 다른 輸入産業의 주요기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3분의 1에 대해서 리스크대책을 강구하고, 3분의 1에 대해서는 시세에 따라 리스크대책을 채택하는 대응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換리스크対策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내의 전문가육성을 포함한 社内체제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기대된다.

③ 또 各企業이 모두 原油구입액의 일정비율(적어도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当面日標로하여 換리스크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3) 輸入金融의 円金融化에 관하여

① 換差損益의 발생은 시퍼즈 유전스 및 輸入유전스 期間중의 換率변동에서 유래된다. 原油가 달러결제로 구입되는 이상 시퍼즈 유전스의 기간에 대해서는 換에 약에 의한 換리스크를 회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輸入유전스기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円金融化함으로써 그 동안의 換리스크, 換差損益의 발생을 회피할 수가 있다. 内外의 金利差에 따른 直物시세와 現物시세의 차이가 결정될 경우 輸入금융의 円金融化도 換에 약도 금리부담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円금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輸入유전스들이

용하여 換에약을 행하는 경우에 비해 기업의 金利부담이 경감된다는 지적이 있다.

② 日本의 輸入금융방식, 즉 輸入달러유전스方式은 해외에서 싸고 운택한 달러資金源이 되고 있으며, 外貨금융은 국내의 금융조절의 한계밖에 있다는 역사적 배경속에서 定着되어 왔다. 특히 최근 原油價格이 급등하는 과정에서의 輸入금융의 확대는 달러자금에 의한 조달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石油産業이 거액의 換差損의 발생에 고민하는 모습은 日本 수입금융방식의 어느 의미에서의 문제점이 石油産業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輸入달러유전스方式이 그런대로 정착되고 있으며 또 輸入달러유전스의 규모가 巨額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良質의 풍부한 円資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으나 하는 것이 輸入金融의 円金融化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된다.

또 기업의 재무구조여하에 따라서는 円金融化에 한계가 있는 기업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輸入금융의 円金融化에는 이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他산업에 있어서 또 일부 石油産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円金融化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듯이 석유산업도 하나의 효과적인 換리스크대책으로 輸入금융의 円金融化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산업이 円金融化를 그런 관점에서 진행하는 경우, 관계금융기관의 協力이 바람직하며 또 円金融化를 진행하는데 따라 예상되는 전체 円자금수요의 증대에 대해 금융정책당국의 정책운용에 있어서의 배려가 요구된다.

④ 石油産業 전체에서 円金融化를 추진하기 위해 이른바 制度金融으로서의 円유전스制度(수입결제 어음을 日本銀行이 자동적으로 할인해 주는 제도)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창설은 금융긴축시에도 거액의 借入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손상시키게 되며, 또 석유 산업만은 특별취급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4) 換子約에 관해서

① 換子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도 찾아 낼수 없어 하나의 효과적인 換리스크対策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또 換에약을 하면 그후 換率이 변해도 이른바 実需原則(実需에 따라 換子約에 한정시키는 日本 換管理의 원칙)에 따라 換에약 이전의 換포지션을 회복시키기 위한 換子約(反対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석유산업의 경우 이 実需原則을 완화 철폐할 경우, 換에약을 처리하기가 용이해진다는 주장이 있다.

② 原油의 月間輸入금액은 약 45억달러의 거액인데 石油産業이 換予約의 비율을 높일 경우 그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換率에 미치는 영향은 石油産業이 예약비율을 높여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이며, 또 현재의 東京外換市場의 규모라면 換예약의 수준을 서서히 증가시켜 간다면 換率에 미치는 영향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石油産業이 換예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갈 경우에도 換市場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여 서서히 이를 진행하고 또 안정적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換率變動準備金制度등에 관하여

① 石油産業의 경우 거액의 換差益을 計上하면서도 거액의 환차손을 내는 일이 있다. 따라서 換差益 발생시 換差損발생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積立, 差損발생시에 이를 사용하는 조세특별조치를 취하면 換差損益을 평균화시킬 수 있고 또 石油産業 경영의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들 경우, 효과를 얻으려면 상당한 減稅額이 예상되므로 현재의 재정형편으로 그 창설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 규모는 다르지만 換差損발생으로 고민하는 산업은 석유산업 이외에도 많으며 석유산업에만 특별취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石油의 안정공급확보의 관점에서 볼 때, 石油産業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준비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換差益의 적립을 강제시킬 것 같다. 그 경우 差益의 적립을 강제시킴으로써 이익이 났는데도 배당할수 없는 사태도 예상되어 기업의 배당정책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差益의 적립을 강제한다는 것은 기업경리등에 관한 규제의 강화가 되므로 석유산업에 대한 公的 介入의 본연의 자세와도 관련되어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石油産業은 기본적으로는 輸入金融의 円金融化, 換予約과 같은 換리스크対策을 강구함으로써 換差損의 발생을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租稅특별조치로서의 換率變動준비금제도의 창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② 石油産業은 앞으로 換리스크대비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換差損益의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換差益이 발생하는 해에는 換差損의 발생에 대비하여 換差益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 적립금의 형태로 内部留保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6) 企業會計處理에 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原油輸入을 포함한 外貨베이스 거래에 있어서는 79년 6월 26일, 기업회계심의회에서 설정된 外貨베이스거래등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시행되고 있다. 그 기준하에서의 外貨베이스 短期金錢債務에 대해 決算時的 환율에 따라 換算替(期末換算替)를 하는 평가손익을 이익 또는 손실로서 計上하는 회계처리원칙에 대해서는 未實現利益인 評價益이 配當原資에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다. 石油産業의 경우에는 原油輸入에 따라 특히 거대한 外貨債務殘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評價損益의 計上이 期間損益의 진폭을 쓸데없이 크게 하고, 期間損益의 모습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6. 石油産業의 換리스크対策 方向

(1) 換率의 변동은 製品코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原油仕入코스트의 변동을 통해서, 그리고 달러베이스輸入金融(輸入유전선등)의 기간중 換差損益(유전선差損益)의 발생을 통해 石油産業의 경영을 不安定化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前者의 換率변동에 따른 제품코스트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原油價格의 변동등의 다른 코스트변동요인과 함께 市場에 커니즘을 통해 제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시켜 석유산업의 경영안정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後者の 換差損益의 발생, 즉 原油구입시점과 輸入유전선 決済시점과의 사이의 換리스크에 대해서는 변동 환율제하에서 예상되는 換率의 등락에 대해 石油産業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재무체질의 강화와 아울러 輸入金融의 円金融化, 換予約과 같은 換리스크対策을 강구해야 하며, 석유산업의 경영자는 換差損益을 기대하지 말고, 또 換差損의 발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을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2) 各企業이 經營의 안정화를 목표로 換리스크対策을 추진해 가는 경우, 原油購入額의 어느 정도만큼 換리스크대책을 강구하느냐 하는 목표수준을 설정, 이를 향해 착실하게 노력하는 한편 그 목표수준을 中長期的으로 상향조정해 가는 対応이 바람직하다.

各企業이 목표수준을 설정할 때에는 예를 들면, 다른 輸入産業의 주요기업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3분의 1에 대해 리스크대책을 강구하고 3분의 1에 대해서는 換率에 따라 리스크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참고가 될 것이다.

또 石油産業의 경영자는 換리스크대책의 중요성을 인

적하고 기업내에서 전문가의 양성을 포함하여 社内体制의 준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 換리스크對策을 추진할 때 輸入金融의 円金融化에 따르느냐, 換子約에 따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두가지 방법을 組合하느냐 하는 것은 各企業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

(3) 輸入金融의 円金融化는 換差損의 發生源을 단절시키는 것이며, 하나의 효과적인 換리스크對策으로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円金融化에 協力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円金融化를 추진해 가는데 따라 예상되는 전체 자금수요의 증대에 대해 금융정책당국의 정책운동에 대응하는 배려가 바람직하다.

또 円金融化에 대해서는 良質의 풍부한 円資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 재무체질여하에 따라서는 円金融化에 한계가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円金融化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 가기 위해 中長期的으로는 自由市場으로서의 円베이스 B/A시장의 창설같은 방법도 하나의 方向이 될수 있을 것이다.

(4) 換子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을 찾아 볼수 없으

며 하나의 효과적인 換리스크 對策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換子約의 활용에 있어서는 石油企業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서서히 이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 安定的으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換리스크對策은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경영책임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현실적으로는 換差損益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換差損의 발생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으로 대처하는 길밖에 없으며 各企業은 換差損益을 内部留保의 충실화로 충당하여 환차손의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6) 현재 外貨베이스去來등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결산시의 換率로 外貨短期金銭채무의 期末換算替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未實現損益인 評價損益을 計上하는 것은 특히 거액의 外貨채무잔고를 안고 있는 석유산업의 경우 期間損益의 진폭을 쓸데없이 크게하고 기간손익의 모습을 오히려 왜곡시키게 된다. 따라서 석유산업에 있어서는 前記기준의 예외취급을 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보인다. *

□ 海外短信 □

멕시코의 油價引下 공세로 對美輸出 위축

-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는 멕시코가 그들의 重質 原油 및 殘渣 燃料油價格을 引下함에 따라 美國市場에서 위축을 받기 시작했다고 同國의 에너지省 消息通들이 말했다.

美國 동부 연안의 需한에도 不拘한 需要감퇴, 멕시코와의 경쟁 등으로 베네수엘라는 對美 殘渣燃料油 輸出에 타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殘渣燃料油의 對美 輸出은 同國 輸出의 約 25%를 點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價格 引下와 下流部門에 參與 계의 등으로 베네수엘라의 美國市場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供給過剩에도 探查努力은 계속하자

- OAPEC 경고 -

아랍 石油 輸出國 機構(OAPEC)은 現世界 石油市場의 供給過剩狀態로 石油探查에 대한 노력이 減退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현재의 供給過剩狀態가 결코 石油 危機가 發生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OAPEC은 최근 發行된 OAPEC Bulletin에서 向後 에너지 위기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많은 產油國들은 새로운 石油探查活動의 增進과 既存油井에서의 生産技術 增進을 통해 生産性 增大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APEC은 또 최근 Occidental社가 40億弗에 達하는 Colorado州의 Oil Shale開發을 中斷한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開發途上國家를 배타하기 위해 제한 탐사를 하고 있는 국제 石油會社들을 비난했다. *